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소방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창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9일 장주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9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리하고, 용어정의 신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보완 등 그 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 정비 및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정리(안 제1조).
- 1) 개정된 지방재정법(2005.8.4.) 및 같은 법 시행령 (2005.12.30.) 내용에 맞게 조례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를 제17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제29조로 개정.

2) “이 조례는 _____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를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는 _____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목적을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신설).

1) “사회단체보조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 통계목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된 경비로 구체화해서 용어 정의.

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보완(안 제11조)

1)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2)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4. 검토의견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정되어 충청북도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왔음.

그러나 이 조례 제정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지금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을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두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 사회단체에서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을 개정하였음.

둘째,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세출예산 통계목에 계상된 경비”로 특정화 해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심의기능을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음.

이러한 사항들은 그동안 조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용어정의 조문 신설 등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